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4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안태준 · 정준호 · 백혜련
박용갑 · 이광희 · 김정호
이정문 · 김영진 · 윤종균
소병훈 · 조정식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제3호 중 “2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p>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u>2억원 이상일 것</u></p> <p>4. <u>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u> <u>「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u> <u>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u> <u>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u></p> <p>② ~ ⑤ (생략)</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1억원</u>-----</p> <p><u><삭 제></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